

#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580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년 4월 23일  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적극행정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임시회의 소집권자는 위원장으로하고(안 제14조제2항), 대리참석 근거규정을 삭제(안 제14조제4항)함.

#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4조제2항 중 “시장 또는 위원장”을 “위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〈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수정 대비 비교표〉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14조(회의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<u>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14조(회의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시장</u> <u>또는 위원장</u>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조례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그 소속 공무원이 대리참석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리참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.</u></p>	<p>제14조(회의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위원</u> <u>장</u>----- -----.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<u>&lt;삭제&gt;</u></p>

##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·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.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.

제6조제2항제4호 중 “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”를 “영 제5조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등에게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”을 “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를 따른다.

제7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영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
2.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

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호”를 “제2호 및 제3호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해야 한다.

제7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포함한다)”를 “포함한다.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  
(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)

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·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호 (종전의 제2호) 중 “영 제12조”를 “영 제12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제2호 및 제9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,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
6.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
7.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
5.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8.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

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장은 인가·허가·등록·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감사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 감사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

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) ① 제7조의2제2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조례 시행 당시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(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)의 경우에도 적용한다.

② 제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조례 시행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·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(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)의 경우에도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① (생략)	제2조(정의) (현행 제1항과 같음)
제4조(서울특별시장의 책무) ① ~ ③ (생략)  <u>&lt;신설&gt;</u>	제4조(서울특별시장의 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<u>④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·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</u>
제5조(전담부서의 지정 등) ①·② (생략)  <u>&lt;신설&gt;</u>	제5조(전담부서의 지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 <u>③ 시장은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.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.</u>
제6조(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) ① (생략) 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	제6조(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(이하 “사전 컨설팅”이라 한다)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
5.·6. (생략)

③·④ (생략)

제7조(적극행정 포상 등) 시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,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<신설>

<신설>

제7조의2(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공무원(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)

4. 영 제5조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5.·6. (현행과 같음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적극행정 포상 등) -----

-----  
-----

-----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----- . 다만,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를 따른다.

1. 영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

2.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

제7조의2(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제2호 및 제3호-----

-----



<신 설>

제8조(적극행정위원회) ① (생 략)

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(생 략)
2.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

<신 설>

3.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

4. (생 략)
5. 공무원(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)이 제7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

<신 설>
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적극행정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.

1. (현행과 같음)
3. 영 제12조제1항-----
4.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후추인에 관한 사항

<삭 제>

2. (현행 제4호와 같음)
5.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
6.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면책건의에 관한 사항

<신 설>

<신 설>

6. (생 략)

제16조(의견청취 등)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7.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 
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

8.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의견  
제출에 관한 사항

9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제16조(의견청취 등) ① (현행 제목  
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위원장은 인가·허가·등록·  
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  
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  
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 
는 시 감사위원장에게 의견을 제  
출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 감  
사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 
회신하되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 
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 
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 
있다.

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  
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 
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  
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 
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  
다.